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20
------------	-------

발의연월일 : 2018. 5. 17.

발 의 자 : 손혜원 · 김경협 · 문희상

박 정 · 신창현 · 안민석

원혜영 · 유은혜 · 이재정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만화가와 만화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발표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 및 표준계

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을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표준약관을”을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 ② (생약)</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 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만화산</u> <u>업관련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u>----- ----- --.</p> <p>④ ----- ----- <u>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u>----- ----- -----.</p>